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양도 주택	④ 구분 [] 장기임대주택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장기어린이집 [] 일반주택			
	⑤ 소재지			
	⑥ 주택면적(㎡)	⑦ 토지 면 적(㎡)	⑧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⑨ 국민주택 여부
	⑩ 취 득 일		⑪ 양 도 일	

- [] ⑫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 ⑬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구 분	장기임대주택 등 내역									
	⑭ 소재지	⑮ 취득일	⑯ 기준호수 임대기간	⑰ 임대 등 개시일	⑱ 공제기간	⑲ 주택임대 기간	세법상 사업자등록		시군구청 임대등록	
							⑳ 등록일	㉑ 등록호수	㉒ 등록일	㉓ 등록호수
㉔장기임대 주택										
㉕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㉖장기 어린이집										

㉗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기간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7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신청인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토지·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④란 :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8호의2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어린이집란에, 같은 조 제4항의 일반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란에 [V]표시로 구분합니다.
- ⑧란 :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⑩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V] 합니다.
- ⑬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V] 합니다.
- ⑯란 :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등록 이후 기준임대 호수 이상을 임대한 기간을 적습니다.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⑰란 :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 ⑱란 : ⑯란의 주택 임대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주택 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적습니다.
- ⑳란, ㉑란 :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 ㉒란, ㉓란 :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 ㉔란, ㉕란, ㉖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㉔란에 소재지 등을 적고,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㉕란에 소재지 등을 적으며,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㉖란에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 ㉗란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일반주택 등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초과하는 경우 별첨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